병역의무자(현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자(현역)]

이 콘텐츠에서는 현역의 종류(현역병,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장교및 부사관)와 각 현역 별 임용(입대), 승진(진급), 전역,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병역의무자(현역) 1
1. 현역의 이해 4
1.1. 현역의 개요 4
1.1.1. 현역의 개념 4
2. 현역병 5
2.1. 현역병의 입영 5
2.1.1. 입영 및 입영일자 등 5
2.1.2. 입영판정검사 7
2.2. 현역병의 복무 10
2.2.1. 복무기간 및 보수 10
2.2.2. 병영생활 및 고충처리 등 11
2.2.3. 특별근무 등 12
2.3. 현역병의 휴가 등 13
2.3.1. 휴가 13
2.3.2. 외출·외박 및 면회 15
2.3.3. 휴가 등의 제한 16
2.4. 현역병의 준수사항 및 징계 등 17
2.4.1. 현역병의 준수사항 등 17
2.4.2. 징계 및 군기훈련 20
2.5. 현역병의 제대 21
2.5.1. 복무기간 만료 21
3. 전환복무 22
3.1. 전환복무 22
3.1.1. 전환복무의 개념 등 22
3.1.2. 의무소방원 23
3.1.3. 의무경찰대원 27
4. 장교 및 부사관 33
4.1. 임용 및 보수 등 33
4.1.1. 장교 등의 임용 33
4.1.2. 장교 등의 진급 35
4.1.3. 장교 등의 보수 38
4.2. 복무기간 및 복지 39
4.2.1. 장교 등의 복무기간 39
4.2.2. 장교 등의 복지 41
4.3. 휴가 및 휴직 43
4.3.1. 장교 등의 휴가 43
4.3.2. 장교 등의 휴직 47
4.4. 고충처리 및 징계 등 49
4.4.1. 장교 등의 고충처리 49
4.4.2. 장교 등의 징계 50
4.4.3. 장교 등의 제적 52
4.5. 전역 등 53
4.5.1. 장교 등의 정년 및 전역 53

1. 현역의 이해

1.1. 현역의 개요

1.1.1. 현역의 개념

현역의 개념 등

현역이란

▪ “현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 징집이나 지원에 따라 입영한 병(兵)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 ※ **『병역의무자(현역)』에서 소개되는 현역의 범위**
>
> 『병역의무자(현역)』에서 제공하는 현역의 범위는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며,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제공합니다.

군관련 콘텐츠 소개

▪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군관련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명	내용	바로가기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판정검사 √ 병역처분 변경 √ 병역면제와 감면 등	링크
『대한민국 여군』	√ 여군 지원준비 √ 여군 복무 등	링크
『병역의무자(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 예술·체육요원 √ 산업기능요원 등	링크
『병역의무자(대체역)』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	링크
『예비군 및 민방위』	√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훈련 √ 민방위훈련	링크

2. 현역병

2.1. 현역병의 입영

2.1.1. 입영 및 입영일자 등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의 결정 등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의 결정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6조제1항).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의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군소요 적성별 충원계획 범위에서 다음의 순서로 결정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7조).

구분	내용	결정 순서
일반 입영 대상자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한 사람	병역판정검사 실시시기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별도 입영 대상자	재학생 입영등 입영희망 시기를 선택한 사람(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입영희망신청자 포함)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그 밖에 별도 입영대상자	별도사유 발생(해소)일자가 빠른 사람(다만,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조제4항제9호의 졸업예정 등으로 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름)

입영일자 본인선택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그 해 또는 다음 해의 입영일자·입영부대·적성별 계획인원의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하여금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자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별 공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1항).

▪ 현역병입영 대상인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본인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1에 따라 본인선택 신청 및 신청한 입영일자의 변경, 취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20조).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5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소, 변경 또는 연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5항 단서).

√ 「병역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별도입영대상자,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4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는 사람

입영일자의 조정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별 및 부대별 계획인원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8조제1항).

▹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이후. 다만, 28세 이상자는 졸업(수료)하는 달의 다음 달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인 경우에는 1회만 다음과 같이 조정

√ 입영일자가 37월인 경우: 89월 또는 다음 해 23월

√ 입영일자가 812월인 경우: 다음 해 23월

▹ 의무·수의장교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3월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5월

▹ 법무사관후보생·법무장교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6월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영일자 연기기간(통틀어 2년) 또는 횟수(5회) 초과자: 허가기간 만료일 이후

▹ 그 밖에 입영일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현역병의 입영 및 입영일자 연기

현역병의 입영

▪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0조제2항 전단).

입영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

>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30세 이하의 사람이 다음의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및 제129조의2제1항).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에만 해당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입영일자 연기

-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의 연령 요건은 연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제1항).
- 입영일자 연기가 처리된 사람 중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입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초에 결정된 입영일에 입영하게 하거나 입영일을 따로 정해 입영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제6항).
-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확인에 따라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제3항).

2.1.2. 입영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입영판정검사의 대상

-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해 신체검사, 심리검사 및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함)를 실시하며,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및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5조).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됩니다(「입영판정검사 규정」 제6조).
  - 「병역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 「병역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방상 필요하여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기본 병과 현역장교의 병적편입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람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보충역·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8항에 따라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및 제129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 「병역법」 제11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시기

▪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실시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및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7조제4항).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가 발송된 후에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이미 통지된 입영판정검사일자에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입영판정검사 규정」 제7조제6항 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입영판정검사 규정」 제7조제6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5항 단서).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등은 제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

입영판정검사 일시 및 장소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

▪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교통여건 등으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3항).

입영판정검사일 연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일 전에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입영판정을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6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 입영판정검사를 연기하려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연기원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3항).

▪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정밀신체검사나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

▪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급이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역처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은 변경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재신체검사

▪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합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의5제3항).

▪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24개월을 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의5제3항).

- 다만, 최초 검사일부터 21개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24개월을 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때에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단서 및 제18조의5제3항).

▪ 재신체검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전단 및 제18조의5제3항).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후단 및 제18조의5제3항).

2.2. 현역병의 복무

2.2.1. 복무기간 및 보수

현역병의 복무기간

복무기간

▪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합니다(「병역법」 제18조제1항 본문).

※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1항 단서).

▪ 현역병의 실제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제3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7조제1항 및 별표 5 참조).

구분	단축된 실제 복무기간
육군 / 해병	24개월 -> 18개월
해군	26개월 -> 20개월
공군	27개월 -> 21개월

※ 복무기간의 조정

-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9조제1항 전단).

·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복무기간의 산정 제외

▪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다음과 같이 현역 복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병역법」 제18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구분	복무기간에서 제외 되는 기간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本刑)에 포함된 미결구금일수는 포함하되,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함]
군기교육처분일수	징계에 따라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현역병의 보수

현역병의 봉급

▪ 현역병의 봉급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3).

계급	월 보수금액
병장	1,500,000원
상등병	1,200,000원
일등병	900,000원
이등병	750,000원

2.2.2. 병영생활 및 고충처리 등

병영생활

군인 상호 간의 관계

▪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1항).

▪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2항).

▪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및 지시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3항).

> ※ **병영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기준**
>
> 전 장병이 병영생활간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부대관리훈령」 제17조).
>
> √ 지휘자(병 분대장 및 조장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님
>
> √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휘자를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음
>
> √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및 모욕 포함) 및 집단따돌림 및 성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

내무생활

▪ 내무생활은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하며,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영내에 거주해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고충처리 및 병영생활 상담

고충처리

▪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제1항).

▪ 군인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1항).

▪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4항제2호).

▪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1항).

병영생활 상담

▪ 군인이 다음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둡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제1항).

- 군 생활에 따른 부적응에 대한 사항
-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에 대한 사항
-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항
- 질병·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대한 사항
-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자녀교육 및 현지생활 부적응 등 사회복지에 대한 사항
- 그 밖에 군 생활로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대한 사항

> ※ 병영생활 고충이나 성범죄 신고 등은 국방 헬프콜1303(☎ 1303, https://helpcall.mnd.mil.kr/)을 이용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2.3. 특별근무 등

특별근무 및 비상소집

특별근무의 의의 및 종류

▪ 부대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율과 보안을 유지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부대별로 다음의 특별근무 등을 실시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6조제1항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 당직근무
- 영내위병근무
- 불침번근무
- 응급진료대기근무
- 군기순찰근무

▪ 특별근무는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6조제2항).

> ※ 초병의 무기사용
>
> 초병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및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8조제1항).
>
> √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
>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
> √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비상소집 응소

▪ 군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비상소집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대에 집결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때
- 경계태세 강화 등 긴급한 소집이 요구될 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때

2.3. 현역병의 휴가 등

2.3.1. 휴가

현역병 휴가의 종류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

▪ 현역병 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제12항제2호, 제13조 및 제14조).

구분		내용
정기휴가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실시
공가		√ 국회·법원·공소청·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0일 이내로 함 √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청원휴가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 연간 30일 이내 √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이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구직휴가를 받는 경우: 2일 이내
특별휴가	위로휴가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7일 이내
	포상휴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 10일 이내
	보상휴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 한 달에 3일 이내

※ 휴가기간 중 주의사항

현역병은 휴가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62조부터 제65조의2까지).

√ 외출·외박 및 휴가자는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이를 제시해야 함

√ 외출·외박·휴가 및 출장 중 긴급시에 부대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행선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소속부대에 긴급한 연락이나 보고해야 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함

√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군사경찰대에 연락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에 보고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2.3.2. 외출·외박 및 면회

외출·외박

외출 및 외박

▪ 외출·외박 및 휴가의 목적은 병영을 일시적으로 떠나 영외에서 각종 용무를 보거나 집안일을 돕고,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높여 병영생활의 명랑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군복무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는 데 있습니다(「부대관리훈령」 제56조).

▪ 외출·외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57조).

구분	내용
신병격려 외출·외박	√ 신병교육 수료 후 실시하는 외출·외박을 말하며, 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을 포함하여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함 √ 외출시간은 그날 과업 개시 시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시간 연장 가능 √ 외박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공휴일(토요일 포함)이 포함될 경우에는 72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음(각 군 참모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음)
특별외출·외박	√ 휴일 및 휴일을 포함한 평일에 실시하는 외출·외박과 포상, 단결활동, 병원진료, 자기개발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과업 중 또는 과업 종료 후 허가하는 외출·외박을 말함 √ 외출시간은 그날 과업 개시 시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시간 연장 가능 √ 외박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공휴일(토요일 포함)이 포함될 경우에는 72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음
공용외출·외박	√ 업무연락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해 허가하는 공적인 외출·외박을 말함 √ 외출시간은 그날 과업 개시 시간부터 과업종료 시간까지를 원칙으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시간 연장 가능 √ 외박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공휴일(토요일 포함)이 포함될 경우에는 72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음

면회

면회의 허가 등

▪ 면회란 병영생활을 하는 군인이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외래인과 면접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51조).

▪ 면회는 휴일 또는 평일에 관계없이 부대임무 수행 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휘관이 허가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52조).

▪ 면회는 지휘관이 지정하는 영내 면회실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53조 본문).

※ 다만,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영내 면회실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부대관리훈령」 제53조 단서).

▪ 면회는 오전일과가 시작되는 08:00부터 오후일과가 종료되는 17:00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절별 일조시간을 고려하여 시간변경 및 면회절차 등은 면회 허가권자가 정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55조).

2.3.3. 휴가 등의 제한

휴가 등의 제한 및 비상소집

휴가 및 외출·외박의 제한

▪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2항).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 장성급 지휘관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군인의 휴가·외박·외출 지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비상소집

▪ 외출·외박 및 휴가 중 방송·신문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해 전시·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로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거나 전시·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귀영해야 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118조제1항).

▪ 휴가 및 출장 중인 사람이 교통두절 등으로 귀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부대에 가서 우선 그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118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각종 수단을 써서 소속부대에 연락해야 하며, 연락이 된 후에는 소속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118조제2항 후단).

2.4. 현역병의 준수사항 및 징계 등

2.4.1. 현역병의 준수사항 등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

근무태만 금지

▪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35조).

-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 직무상 공격해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않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해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사용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명령 불복종 금지

▪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군형법」 제44조).

구분	처벌사항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47조).

상관 폭행 등 금지

▪ 상관을 폭행, 협박,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군형법」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구분	처벌사항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집단을 이루어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모욕금지

▪ 상관에 대해 모욕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4조).

구분	처벌사항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군용시설 등 방화 및 손괴 금지

▪ 군용시설이나 군용물에 대해 방화 또는 손괴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6조, 제67조 및 제69조).

구분	처벌사항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毁)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불을 놓아 군용에 사용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	√ 군용에 사용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군용에 사용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불을 놓아 노적(露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사용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음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한 사람 √군용에 사용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정치참여 금지

▪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4조제1항).

-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해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의 행위
-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해 위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2.4.2. 징계 및 군기훈련

징계

징계종류

▪ 현역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제2항).

징계의 종류	내용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함
군기교육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해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함
감봉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함
휴가단축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함
근신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함
견책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훈계를 말함

※ 그 밖에 현역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기훈련

군기훈련 실시

▪ 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 군기훈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 군기훈련은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1일 군기훈련은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2.5. 현역병의 제대

2.5.1. 복무기간 만료

전역

전역증 교부 및 예비역 편입

-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조제1항).
-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전역증을 다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조제3항).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예비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전단).

전역의 보류

- 현역병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4항·제5항·제6항).
  -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에 따른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 경우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음(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해야함)
  -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 경우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로 함(다만, 전역 보류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전역조치를 해야 함)

3. 전환복무

3.1. 전환복무

3.1.1. 전환복무의 개념 등

전환복무

전환복무제도

▪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

▪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5조제1항).

-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 위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계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5조제2항).

▪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5조제3항 전단).

-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25조제3항 후단).

전환복무의 해제

▪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이 다음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5조제6항,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제1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에 따른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병역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
-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수형(受刑)(다만, 「병역법」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
-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 국방부장관은 전환복무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5조제7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전환복무기간의 만료

▪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을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 국방부장관은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25조제5항).

> ※ 그 밖에 전환복무 대상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
> √ 의무경찰대원: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의무소방원: 「의무소방대설치법」

3.1.2. 의무소방원

의무소방원의 개념

의무소방원이란

▪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시 구조·구급활동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을 말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 제1조 및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조).

의무소방원의 선발

의무소방원 선발대상

▪ 의무소방원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조제2항).

▪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2)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 소방청장은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만 18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사람 제외) 중에서 지원을 받은 후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해야 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7조).

▪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구분	내용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은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으로 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본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조 및 제8조).

구분	내용
신체검사	√ 신체검사의 기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별표 1 √ 신체검사의 실시: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및 신체검사표에 따라 실시 √ 신체검사의 판정: 시험장소에서 지체 없이 판정함 √ 범죄경력 조회: 신체검사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일 전까지 실시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사람은 중앙소방학교에 설치된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판정결과를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함
면접시험	√ 면접시험의 실시: 중앙소방학교장은 시험평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의무소방원 면접시험표에 따라 실시 ※ 다만, 선택형 필기시험(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의 평가 내용 중 일반상식을 생략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보고:시험결과를 개인별 성적(추천)순위 명부에 따라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 다만, 소방청장은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선택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항).

- 필기시험(국어·국사 및 일반상식):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실기시험: 전산·운전·위험물·소방설비·소방점검보조 또는 구급업무보조 등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격증의 소지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때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

▪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조회 결과에 따라 결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시험 고득점 순위로 하며, 선발예정인원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장이 결정합니다(「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0조제1항).

▪ 최종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장이 발표 공고하고 합격통지서를 개별로 통지합니다(「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0조제2항).

의무소방원의 배치 및 임무

의무소방원의 배치

▪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은 다음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특별시·광역시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5조제1항).

▹ 성적순에 따라 본인 희망지에 배치

▹ 본인 희망지가 반영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의무소방원은 내무생활을 해야 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의무소방원의 임무

▪ 의무소방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구분	내용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	√ 화재 등 재난·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구급활동의 지원 √ 소방용수시설의 확보 √ 현장 지휘관의 보좌 √ 상황관리의 보조 √ 그밖에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소방행정의 지원	√ 문서수발 등 소방행정의 보조 √ 통신 및 전산 업무의 보조 √ 119안전센터에서의 소내근무의 보조 √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지원 √ 소방순찰 및 예방활동의 지원 √ 차량운전의 지원
소방관서의 경비	—

의무소방원의 휴가, 외출 및 외박

의무소방원의 휴가

▪ 의무소방원의 휴가는 다음과 같이 연가·공가·청원휴가·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2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구분	내용
연가	연 25일 이내에서 1회 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음
공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필요한 기간 동안 허가함 √ 공무와 관련되어 법원에 소환된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공무에 따른 부상·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때
청원휴가	√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가 필요한 때: 연 2개월 이내 √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때: 연 20일 이내 √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 연 14일 이내
위로휴가	훈련·순찰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 7일 이내
포상휴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1회 10일 이내

의무소방원의 외출

▪ 의무소방원의 외출은 정기외출·특별외출·공용외출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허가합니다(「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7조제1항).

구분	내용
정기외출	휴일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 휴무당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출
특별외출	가족면회·포상·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특별히 허가하는 외출
공용외출	업무연락 또는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하는 외출

▪ 위에 따라 허가되는 외출시간은 당일 09:00부터 일석점호 전까지 입니다(「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7조제2항).

의무소방원의 외박

▪ 의무소방원의 외박은 정기외박과 특별외박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허가합니다(「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8조제1항).

구분	내용
정기외박	공휴일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 휴무일이나 평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박
특별외박	가족면회·포상·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나 공휴일이 연이어 있을 때 대원의 사기를 위해 허가하는 외박

▪ 위에 따라 허가되는 외박시간은 8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8조제2항).

의무소방원의 교육·훈련 및 징계

의무소방원의 교육·훈련

▪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에 대해 다음의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의2제1항 및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소방실무 교육·훈련
- 보건안전 교육·훈련
- 정훈교육

의무소방원의 징계

▪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2조).

- 「의무소방대설치법」 또는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을 위반한 때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귀대하지 않은 때
- 그 밖의 근무수칙을 위반한 때

▪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이 영창(營倉)·근신(謹愼) 및 견책(譴責)으로 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제5조).

구분	내용
영창	√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금장에 구금하는 것 √ 영창기간은 15일 이내로 함
근신	√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 √ 근신기간은 15일 이내로 함
견책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悔改)하게 함

※ 그 밖의 의무소방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https://www.nfs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3. 의무경찰대원

의무경찰대원의 개념

의무경찰대원이란

▪ 현역병지원자 중에서 간첩(무장공비 포함)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및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을 말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1조).

의무경찰대원의 선발

의무경찰대원 선발대상

▪ 의무경찰대원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6조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조제1항 참조).

※ 이 경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대원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선발함

▪ 의무경찰대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6조)

- 병역판정검사를 필하고 현역병 징집이 결정된 사람
- 병역(신체검사 및 입영)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병역법」 제62조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 받은 사람
-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재판 계류 중인 사람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를 선발해야 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의무경찰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만 해당) 1부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 1부
-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학력증명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제외) 1부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증 사본(필기시험을 갈음하여 실시되는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만 해당) 1부

▪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본문).

- 제1차시험: 적성검사
- 제2차시험: 신체·체력검사
- 제3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 제4차시험: 면접시험

▪ 다만, 제3차시험 또는 제4차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실시합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단서·제3항).

※ 운전, 전산처리, 외국어 사용 및 예술·체육 분야 등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경찰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갈음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를 공고하고 합격통지서를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2조제3항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8조제5항).

의무경찰대원의 배치 및 임무

의무경찰대원의 배치

▪ 의무경찰대원으로 임용되어 육군훈련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소속기관 등에 배치하는 경우 교육성적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9조제2항 본문).

▹ 희망지와 주소지를 감안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배치하되 성적이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배치(다만, 성적우수자 1위~5위는 주소지에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지에 우선 배치)

▹ 위의 기준에 따라 배치되지 않은 사람: 충원 미달 소속기관 등에 본인의 희망자를 반영 성적순에 따라 배치

▹ 그 밖에 본인의 희망지가 반영되지 않은 사람: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직권에 따라 배치

▪ 다만, 의장대, 악대, 운전 및 전산특기자와 임무수행상 특히 필요하여 경찰청장이 따로 지정한 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 등의 장의 요청에 다라 우선하여 선발배치 할 수 있습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9조제2항 단서).

▪ 해양의무경찰대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기본교육을 마친 의무경찰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배치합니다(「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4조제1항 본문).

▹ 경찰기본교육 중 1, 2, 3차 희망지를 파악한 후 소속기관 등의 충원수요를 감안하여 군 기본교육과 경찰기본교육의 교육성적을 합산한 성적순으로 1차 희망지에 우선 배치(다만, 교육성적이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배치하되 경찰기본교육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없을 경우 군 기본교육 성적으로 갈음 할 수 있음)

▹ 충원이 필요한 소속기관 등에 대한 희망자 미달 시 교육성적 순으로 2, 3차 희망지에 배치(다만, 교육성적이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배치)

▹ 위에 따라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무경찰은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충원이 필요한 소속기관 등에 배치

▪ 다만, 특기자와 임무수행 상 특히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해양경찰기관에 우선적으로 선발·배치할 수 있습니다(「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4조제1항 단서).

의무경찰대원의 임무

▪ 의무경찰대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합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조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조).

▹ 대간첩작전

▹ 치안업무 보조

의무경찰대원의 휴가, 외출 및 외박

의무경찰대원의 휴가

▪ 의무경찰대원의 휴가는 다음과 같이 연가·공가·청원휴가·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구분	내용
연가	연 25일 이내에서 1회 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음
공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필요한 기간 동안 허가함 √ 공무와 관련되어 법원에 소환된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공무에 따른 부상·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때
청원휴가	√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가 필요한 때: 연 2개월 이내 √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때: 연 20일 이내 √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 연 14일 이내
위로휴가	훈련·순찰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 7일 이내
포상휴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1회 10일 이내

의무경찰대원의 외출

▪ 의무경찰대원의 외출은 정기외출·특별외출·공용외출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허가합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2조제1항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4조제1항·제2항).

구분	내용
정기외출	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당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출
특별외출	가족면회·포상·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특별히 허가하는 외출
공용외출	업무연락 또는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하는 외출

▪ 위에 따라 허가되는 외출시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2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4조제2항).

- 경찰청 의무경찰대원: 당일 09:00부터 일석점호 전까지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대원: 일과시간 내에 한정하며, 특별외출 및 공용외출은 당일 20:00까지 연장 허가할 수 있음

의무경찰대원의 외박

▪ 의무경찰대원의 외박은 정기외박과 특별외박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허가합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3조제1항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5조제1항).

구분	내용
정기외박	공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이나 평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박
특별외박	가족면회·포상·기타 특수한 사정이나 공휴일이 연이어 있을 때 대원의 사기를 위해 허가하는 외박

▪ 위에 따라 허가되는 외박시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3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5조제2항).

▹ 경찰청 의무경찰대원: 8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출발시간은 외박 개시일 09:00로 하고, 복귀시간은 외박 만료일 저녁 생활점검 시까지로 줄일 수 있음)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대원: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도서지역 및 원거리 거주자, 함정근무자, 모범의경, 자격증 취득자 등 가산일수 추가자는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정기외박은 1회 5박 6일을 초과해서는 안됨)

의무경찰대원의 교육 및 징계

의무경찰대원의 교육

▪ 의무경찰대원은 다음의 군기본교육과 정훈교육을 받습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4조, 제61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0조 및 제41조 참조).

구분	내용
군기본교육	√ 경찰실무교육 √ 의무경찰 특기교육
정훈교육	√ 충성심, 국가관 확립과 경찰정신 함양 등으로 사명감 고취 √ 적시성 있는 시사교육으로 올바른 시국관 확립 √ 공산주의 대응이론, 북한실정 및 우리의 안보현실 등 교육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무장 강화 √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인성 및 윤리교육철저로 복무기강 확립과 자체 사고방지 √ 인간의 존엄성,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인권존중의식 함양

의무경찰대원의 징계

▪ 의무경찰대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4조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7조).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때

▹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품위를 손상한 때

-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미귀한 때
- 교육중(타기관 교육 포함) 고의적인 낙제나 퇴교를 한 때와 교육을 기피한 때
- 교육중(타기관 교육 포함) 교칙을 위반한 때
- 고의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때
- 규정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 포로로 관리되지 않은 때
- 그 밖에 복무규율을 위반한 때

▪ 의무경찰대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이 강등, 정직,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謹愼)으로 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구분	내용
강등	징계 당시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
영창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대·함정(艦艇) 내 또는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구금하는 것 ※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으로 그 징계처분을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해야 함
휴가 제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 ※ 다만,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함
근신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평상근무에 복무하는 대신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면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4. 장교 및 부사관

4.1. 임용 및 보수 등

4.1.1. 장교 등의 임용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장교 임용

▪ 장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군인사법」 제11조제1항).

-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6년을 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준사관 임용

▪ 준사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함. 이하 같음)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

- 원사인 사람 또는 상사로 2년 이상 복무 중인 사람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지원한 사람
  - √ 회전익항공기조종 준사관
  - √ 통번역 준사관
  - √ 방공무기통제 준사관
  - √ 항공요격통제 준사관
-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에서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로서 현역 복무 중인 사람
  - √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부사관 임용

▪ 부사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따라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임용의 제한

임용제한 연령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15조제1항).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8세
대위		34세
중위		31세
소위	20세	29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9세

▪ 위에도 불구하고 최고연령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15조제2항·제3항,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1호나목·제2호).

구분	최고연령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	35세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	29세
법무·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	35세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29세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37세

※ 다만,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제15조제4항).

결격사유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10조제2항).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4.1.2. 장교 등의 진급

장교 및 부사관의 진급 대상자 선발

장교 진급 대상자 선발기준

▪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진급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의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3조).

평가사항	내용
경력	√ 경험한 직책 √ 군사교육 √ 군사적 전문기능 √ 진급기록
복무성과	√ 근무성적 평정기록 √ 군사교육성적 √ 상벌사항
그 밖의 사항	√ 품격 √ 신체조건 √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 무보직기록, 입원기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기준

▪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는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발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해당 특기 분야에 대한 군사적 전문기능
- 선발시험 성적
- 복무성적(근무평정기록, 군사교육성적 및 상벌사항 등)
- 신체조건
- 학력 및 경력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장교 및 부사관의 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다음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진급시킵니다(「군인사법」 제24조 본문 및 제26조제1항).

진급될 계급	최저근속기간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사		상사로서 7년
상사		중사로서 5년
중사		하사로서 2년

※ 다만, 「군인사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시키지 않으며,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합니다(「군인사법」 제24조 단서 및 제26조제1항 단서).

▪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2항).

▪ 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5항).

명예진급

▪ 복무 중에 특히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4제1항 및 제53조의2제1항).

▪ 명예진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

-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
-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
-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시키는 경우

▪ 명예진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예비역에 편입되는 사람으로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본문).

※ 다만, 현역 복무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단서).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 「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

영관급 장교의 임기제 진급

▪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해 1계급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2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
-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부사관의 근속진급

▪ 부사관 중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참모총장은 인력 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1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다시 경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교육과정에서 낙제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교된 사람

√ 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람

√ 그 밖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함)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4.1.3. 장교 등의 보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봉급 등

봉급 및 호봉

▪ 군인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라 지급합니다(「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 군인의 호봉은 「군인보수법」 별표 2에 따릅니다(「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본문).

※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군인보수법」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합니다(「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

초임 호봉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初任)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합니다(「군인보수법」 제9조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군인보수법」 제9조 단서).

√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兵科)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 제외)의 경력이나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4.2. 복무기간 및 복지

4.2.1. 장교 등의 복무기간

복무기간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따르지 않고 임용된 하사 제외)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

구분	의무복무기간
장기복무 장교	10년 ※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음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 제외] (위 사람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13년 (15년) ※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음
단기복무 장교	3년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6년
준사관	5년 ※ 다만,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제외)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음
장기복무 부사관	7년 ※ 다만,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음
단기복무 부사관	4년

복무기간의 계산

▪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및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후단).

▪ 다음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 휴직 또는 정직 기간

√ 구류기간

※ 다만, 「군인사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단서).

복무기간의 연장

▪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장기복무 지원서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고 정해진 전형을 거쳐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단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조).

▪ 이 경우 단기복무자의 복무 연장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

4.2.2. 장교 등의 복지

군 숙소 지원 등

군 숙소 지원

▪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지원에 따르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 제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

-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 √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 √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 √ 월차임

▪ 국가는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2항).

▪ 군 숙소의 규모와 시설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평균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정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3항).

주택의 우선공급

▪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평가 요소에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사람이 우선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무주택기간
- 복무기간
- 부양가족 수
- 「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 여부 등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 지원

▪ 국방부장관은 군인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 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교육 및 보육 지원

교육 지원

▪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1항).

▪ 교육부장관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입학을 지원해야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군 학자금 대부

▪ 학자금 대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원 제외)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 위에 따라 대부하는 학자금의 상환은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합니다(「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단서).

√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중도 퇴학하는 경우

√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 대부를 받은 군인이 전역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 3자녀 이상 대부받은 학자금의 상환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

자녀 보육지원

▪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3항 전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숙식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3항 후단).

▪ 군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숙식시설의 입주자는 다음의 평가 요소의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전단).

- 학습 중인 학교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
-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
- 직계존속인 군인의 근무지역
- 그 밖에 군인 자녀의 연령 및 직계존속인 군인의 계급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이 경우 학습 중인 학교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후단).

4.3. 휴가 및 휴직

4.3.1. 장교 등의 휴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가

연가

▪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Q. 연가의 승인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 A. 연가의 승인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전단).
>
> **연가의 승인 일수 = 해당 연도 실제 복무기간(개월) / 12개월 X 해당 연도 연가일수**

※ 위 해당 연도 실제 복무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후단).

※ 다음의 기간은 연가의 승인 일수의 계산식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제외),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

▪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연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공가

▪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승인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국회·법원·공소청·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로 함)
-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군보건의료기관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 하사 이상 군인의 공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가를 시간 단위로 승인했을 때에는 누계 8시간을 공가 1일로 계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청원휴가

▪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전단 및 제12항제1호).

신청사유	휴가기간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연간 30일 이내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
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연간 30일 이내
3.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4.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5.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6.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7.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8.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9.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1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1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12.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이하 "단기복무자"라 함)으로서 전역예정일(「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을 말함)이 1년 이내인 군인이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할 때 (다만, 단기복무자가 복무기간 중 구직휴가를 사용한 후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① 복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 3일 이내 ② 복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 4일 이내 ③ 복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 5일 이내

▪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위 1. 및 2.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후단).

특별휴가

- 지휘관은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에게 7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지휘관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해 10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본문).

  ※ 다만, 대간첩작전유공자 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단서).

- 지휘관은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하는 군인에 대해 3개월 이내에서 전역 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해 한 달에 3일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 지휘관은 하사 이상 군인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근속휴가를 줄 수 있고, 이 경우 근속휴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근속기간(임용된 날부터 계산하되, 하사 이상 군인이 전역 후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다시 임용되기 전의 복무기간을 포함) 중 각 1회로 한정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7일 이내
  -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군인: 5일 이내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군인: 3일 이내

외출

- 하사 이상 군인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외출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7항).
- 외출은 1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8항).

휴가기간 산정 및 제한 등

휴가기간의 산정방법

-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단서).

  -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휴가를 제외한 청원휴가 중 동일한 사유의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같은 연도 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같은 연도 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 거리일 경우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국외여행

▪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군인(휴직 중인 군인 포함)이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 「군인사법」 제7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휴가의 제한

▪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2항).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연가의 저축

▪ 하사 이상 군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남은 연가 일수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연가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4.3.2. 장교 등의 휴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휴직사유	휴직기간
√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1년
행방불명되었을 때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 제외]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함 ※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만 해당)	채용기간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만 해당)	2년 이내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만 해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 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가 아니면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3항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2).	자녀 1명당 3년 이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만 해당)	1년 이내 ※ 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음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만 해당)	3년 이내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Q.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나요

A. 조부모 또는 손자녀 돌봄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구분	휴직사유
조부모 돌봄	√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본인 외에 조부모의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
손자녀 돌봄	√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 본인 외에 손자녀의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

4.4. 고충처리 및 징계 등

4.4.1. 장교 등의 고충처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고충처리

고충의 청구

▪ 군인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군인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3항).

- 소속
- 계급, 군번 및 성명
- 고충심사 청구내용

고충에 대한 심사

▪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

▪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관(關係官)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고충심사의 결정

▪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고충심사위원회는 결정서가 작성되면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위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한 군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재심청구

▪ 고충을 청구한 군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4항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전단).

- 장교준사관부사관: 「군인사법」 제51조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병: 차상급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 소관 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결정된 재심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4.4.2. 장교 등의 징계

징계

징계사유 및 시효

▪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6조).

-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은 이 콘텐츠 < 현역병 – 현역병의 준수사항 및 징계 등 – 현역병의 준수사항 등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함)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제1항).

- 징계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징계 사유가 「군인사법」 제56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징계의 종류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군인사법」 제57조제1항).

구분		내용
중징계	파면·해임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함
	정직	√ 직책은 유지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함
경징계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
	근신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
	견책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

징계의 처분절차

▪ 징계처분 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1항).

▪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2항 본문).

※ 다만, 심의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2항 단서).

▪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3항).

▪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징계권자와 심의대상자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4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4항 단서).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功績)·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4제1항).

▪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4제2항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구분	양정 기준
징계의 양정기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청렴의무 위반 사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성 관련 사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음주운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징계부가금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

항고

▪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제1항 본문).

※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제1항 단서).

▪ 위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나 소속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 등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이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제4항 후단).

▪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제6항 전단).

※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제6항 후단).

4.4.3. 장교 등의 제적

제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40조제1항).

- 사망하였을 때
-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 파면되었을 때
-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다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
- 「군인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
-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이나 제적은 임용권자가 명합니다(「군인사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3조제1항 단서).

4.5. 전역 등

4.5.1. 장교 등의 정년 및 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정년

장교 및 부사관의 정년

▪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8조제1항 본문).

계급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4년
소장	59세		6년
준장	58세		6년
대령	56세	35년	
중령	53세	32년	
소령	50세	24년	
대위 중위 소위	43세	15년	
준위	55세	32년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5조제1항 본문)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합니다(「군인사법」 제35조제1항 단서).

▪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도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5조제2항).

▪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전역을 원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따르지 않고 임용된 하사 제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역시켜서는 안 됩니다(「군인사법」 제35조의2제1항).

-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 「군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이나 제적은 임용권자가 명합니다(「군인사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3조제1항 단서).

▪ 군인은 「군인사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휴직되거나 현역에서 전역되거나 제적되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제44조제2항).

본인 의사에 따르지 않은 전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 심신장애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

※ 위에도 불구하고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3항).

- 「군인사법」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해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정년 전역 등

▪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본문).

※ 다만, 재임용 심사의 결과 재임용되지 않은 장교로서 정년을 초과한 교수 등의 경우에는 그 재임용하지 않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단서).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장기복무 연장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 포함)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2항 본문).

퇴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됩니다(「군인사법」 제41조).

-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 전상공상으로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